긴급입찰 사유서

1. 관련 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7년 통합상황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나. 사업금액 : 504,600,000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27. 1. 1. ~ 12. 31.

3.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

1.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가.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 및 대규모 해양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핵심 시스템임

나. 본청·소속기관 종합상황실(총 28개소)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 외부기관에도 설치되어 있으며, 해양에서 상황 발생 시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휘·보고·전파 등 신속·정확한 대응에 나서고 있음

다.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통합상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해양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긴급입찰을 요청함

해 양 경 찰 청 장